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홀로 사는	노인 고독시	나 예방 및 지원 조례안
의안번호	제120호	제 출 자	이태모 의원 외 5명
제 출 일	2022. 9.14.	회부연월일	2022. 9.14.

1. 제안이유

- O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(死後)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O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5~6조)
- 협력체계(안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, 제28조, 「노인복지법」제4조, 제27조의 2,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